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IV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최 경 진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④-5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IV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최 경 진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IV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An analysis of Discussion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UNCITRAL W/G IV (2)

연구자 : 최경진(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Choi, Kyoung Jin

2014.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미래 의제로서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범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NCITRAL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IV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IV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최근 UNCITRAL WG IV의 논의 사항 소개 및 검토
 - 제48차 WG IV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3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일반 규정(General), 전자거래 규정(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제49차 WG IV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4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3초안과 전체적인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조문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짐. 즉,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 정의와 범위, 서면, 서명, 원본성/유일성/완결성, 일반신뢰성기준,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
 -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규정안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져 온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 범위,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 전자문서에 관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서명법」, 증권적 채권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전자약속어음에 관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채권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기·등록을 이용하여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도출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3초안 및 제4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3초안 및 제4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

- ▶ 주제어 : 전자양도성기록, 증권적 채권,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점유,
지배, 소지, 유가증권, 전자문서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UNCITRAL has been discussing on making new rul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 of use of transferable records by electronic means.
- UNCITRAL Texts has been very important for us to develop international trade.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s:
 - Introduction of discussion on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UNCITRAL WG IV (3rd and 4th draft)
 - In-depth analysis of core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 duality of regimes and scope of application
 - ‘possession’ and ‘control’ as its substitute
 -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the related Korean domestic laws

II . Main Contents

- Introduction of discussion history in UNCITRAL

- Analysis of the third draft of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iscussed in the 49th WG IV, and the fourth draft prepared for discussion in the 50th WG IV
 - General,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ion to Korea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first draft and domestic laws including:
 -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Act on issuance and trafficking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ct on Secured Movable and Obligations”, “Electronic Signature Act”, “Civil Law”
 - Suggestion to Korea for responding to UNCITRAL drafting and developing Korean laws related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 Translations of the third and fourth draft

III. Expected Effect

- Basic research for the further study related with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king government and corporate possible to respond to new change in a transferable records

➤ Key Words :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CITRAL**, Electronic Bill, Electronic Obligatory Right, **WG IV**, Electronic No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Electronic Document, Possession, Control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II. 연구의 내용과 범위	17
III.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추진 방향	17
1. 추진배경	17
2. 기능적 등가성의 확보	18
제 2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및 제49차 회의 분석	21
I. 제48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21
1. 규정안의 구성 체계	21
2. 적용범위	22
3. 적용제외	22
4. 정 의	23
5. 당사자자치	24
6. 서면 및 서명	24
7.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	25
8.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25
9.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26
10. 복수 원본의 발행	26
11. 점유 및 지배	27

12. 교부·제시 및 배서	28
13. 재발행	28
14.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	29
II. 제49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29
1. 규정안의 구성 체계	29
2. 적용범위	31
3. 정 의	31
4.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33
5. 서 면	34
6. 서 명	34
7.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	35
8. 점유(possession)와 지배(control)	41
9. 제 시	47
10. 배 서	47
11.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	48
12.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	48
제 3 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의 핵심 쟁점 분석	49
I.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범위	49
1. 규범의 이중성 지양	49
2. 적용범위 - 다른 협약과의 관계	51
II.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와 지배	54
1. 규정안 상의 점유	54
2. 우리 법상의 점유 관념	57
3. 검 토	60

제 4 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3
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3
II. 전자서명법	66
III. 민 법	67
1. 증권적 채권	68
2. 소지와 점유	71
IV.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3
V. 전자금융거래법	76
V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77
제 5 장 결 론	79
참 고 문 헌	81
부 록 1	83
부 록 2	115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미래 의제로서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선정하여 2013년 5월 제47차 UNCITRAL IV 전자상거래 분과 실무작업반(이하 “실무작업반” 혹은 “WG IV”라 함)에서 처음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이하 “규정안”이라 함)¹⁾이 제안되어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었다.²⁾ 2013년 12월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8차 실무작업반,³⁾⁴⁾ 2014년 4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제49차 실무작업반⁵⁾에서도 계속 축조심의회가 이루어졌으며,⁶⁾ 2014년 11월에 비엔나에서

-
- 1) A/CN.9/WG.IV/WP.122. 이하 “제1초안”이라 한다.
 - 2) 제1초안에 대한 소개는 최경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 - 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제1호(2013), 285-318면 참조.
 - 3) 제47차 WG IV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제2초안”이라 함)에 대한 축조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2초안은 A/CN.9/WG.IV/WP.124 및 A/CN.9/WG.IV/WP.124/Add.1 참조. 제2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경영,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의 ‘증권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최근 UNCITRAL Working Group IV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2014), 135-168면 참조.
 - 4)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및 제2초안의 원문 및 번역문은 최경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의 부록1과 부록2 참조.
 - 5) 제48차 WG IV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제3초안”이라 함)에 대한 축조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3초안은 A/CN.9/WG.IV/WP.128 및 A/CN.9/WG.IV/WP.128/Add.1 참조.
 - 6)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2009.6.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2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2010.6. 뉴욕에서 개최된 제43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콜로키움 개최를 요청하였다. 2011.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4차 본회의에서 실무작업반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

개최될 제50차 실무작업반⁷⁾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⁸⁾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국제거래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적인 양도성 문서와 관련된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UNCITRAL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여 2011.10. 비엔나에서 첫 WG IV 회의(제45차 WG IV)가 개최되었다. 이후 2012.6. 뉴욕에서 개최된 제45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의결하고, 2012.10. 제46차 WG IV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 초안의 준비에 합의하였다. 2013.5. 뉴욕에서 개최된 제47차 WG IV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제출되어, 축조검토가 이루어졌다. 2013.12.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8차 WG IV 회의와 2014.5. 뉴욕에서 개최된 제49차 WG IV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규정안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 제49차 회의의 한국대표단으로서 법무부에서 정경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최임열 검사(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강현구 단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원에서 김종근 판사(수원지법여주지원)가 참석하였다.

7) 제49차 WG IV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제4초안”이라 함)에 대한 축조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4초안은 A/CN.9/WG.IV/WP.130 및 A/CN.9/WG.IV/WP.130/Add.1 참조.

8) 실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축조심의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나 규정안의 적용범위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9) 이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최경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에서 제1초안과 제2초안에 대한 소개와 분석 및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그 뒤를 잇는 후속 연구로서 제3초안과 제4초안을

II.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제48차 실무작업반의 논의사항과 그 결과를 반영한 제3초안의 내용 및 제49차 실무작업반의 논의사항과 그 결과를 반영한 제4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법과의 비교검토에 앞서 총론적 관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검토한 후 국내법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규정의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능한 원문의 표현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초안 형태로 제시된 원문에서 사용된 “[]”, “/” 또는 “…”와 같은 표현은 그대로 기재하였다.

III.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추진 방향

1. 추진배경

UNCITRAL이 목표로 하는 국제거래에 관한 규범의 통일 작업의 기존 성과로서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Geneva, 1930) 및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Cheques (Geneva, 1931) (이하에서는 위 2개의 협약을 “제네바협약들”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그런데 제네바협약들이 채택될 당시에는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유일한 매체로서 종이의 이용이 상정되었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로 어음이나 수표가 유통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자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실제 전자거래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증

중심으로 한다.

권적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도 전자적인 환경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특히 전자적인 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모델법,¹⁰⁾ 전자서명모델법,¹¹⁾ 및 전자계약협약¹²⁾이 제정되어 전자적인 거래에 관한 법적 기반도 형성되어 왔다. 결국, 실무적, 기술적,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적인 양도성증서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을 목표로 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작업반에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2. 기능적 등가성의 확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제정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이 기반의 양도성기록과 전자적인 양도성기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그 관계 여하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내용이나 적용 범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목표 및 내용은 전자양도성기록과 종이 기반의 양도성기록 사이에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을 확보하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논의는 기능적 등가성의 확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논의는 부득이 기존에 UNCITRAL에서 채택한 다양한 국제규범의 논의의 틀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기존 규범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

제네바협약들의 규정은 종이 기반 환경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문제는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들이 전자적인 형태의

10)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11)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1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New York, 2005).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제네바협약들 체계 하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전자양도성기록규정안의 적용 범위, 그 최종적인 형식,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에 의한 최종적인 문구의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최종적인 입법형태가 모델법(Model Law)에 불과하다면,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은 그 모델법 규정을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네바협약들 상의 종이 기반 규정들이 종이기반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협약의 당사국은 각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는 전자적인 형태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도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전자적인 형태의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제네바협약들을 수정하거나 제네바협약들을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¹³⁾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해석 하에서 제네바협약들을 위반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 기존 제도와 별개의 독립된 전자증서 제도로서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¹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네바협약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네바협약들을 들여다보면 종이 기반의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이용을 암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이 형식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¹⁵⁾ 더욱이 제네바협약들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네바협약들이 전자적 매체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제네바협

13) A/CN.9/WG.IV/WP.125.

14) 電子記録債權法(平成19年法律第102号).

15) A/CN.9/WG.IV/WP.125, para. 24.

약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제네바협약들을 보충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전자계약협약에서도 활용되었다. 즉,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에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¹⁶⁾(이하에서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CISG를 위반함이 없이 전자적인 국제거래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규정을 두었다.¹⁷⁾

UNCITRAL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국제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맞게 법을 발전시켜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즉, 종이기반 문서의 이용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적 등가성을 수립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의 지속적인 목표이다.¹⁸⁾ 결국 제네바협약들의 종이 기반의 규정들에 대한 수정 없이 기존의 양도성증서를 전자적 환경에 맞게 유통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가적인 규정을 두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UNCITRAL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규범의 또 다른 방향성은 국제적인 통일 규범이 특정 기술의 채택으로 사실상 일원적인 강제수단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유지하는 것이다.¹⁹⁾

16)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sales/cisg/CISG.pdf>> (2014.10.19. 방문).

17) 전자계약협약이 기존 CISG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및 Hamburg Rules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A/CN.9/527, paras. 27-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작업반의 논의는 기존 제네바협약들의 현대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18) A/CN.9/768, para.21.

19) A/CN.9/WG.IV/WP.115, para. 35.

제 2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및 제49차 회의 분석

I. 제48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1. 규정안의 구성 체계

제48차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가 반영된 제3초안²⁰⁾은 5개 영역,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일반(General), 전자거래 규정(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규정으로서 제3초안의 적용범위, 적용제외, 정의를 비롯하여, 일반원칙으로서 해석 기준, 당사자 자치, 정보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양도성기록의 전자거래 측면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서면, 서명, 원본, 전자양도성기록의 독자성과 완결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동의, 복수 원본의 발행, 실체적인 정보요건, 부가정보, 점유,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의 신뢰성, 교부, 제시, 배서, 이전, 정정, 재발행, 교체, 분할 및 통합,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 전자양도성기록의 담보, 보관 등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는 그 역할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경간 승인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비차별성을 선언하고 있다.

20)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A/CN.9/WG.IV/WP.128,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는 A/CN.9/WG.IV/WP.128/Add.1 참조.

2. 적용범위

제2초안은 규정안의 적용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증서와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동가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대응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회원국 국내 실체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48차 회의의 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었다. 즉,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제2조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방안과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는 방안이다. 결국, 제3조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가 확정될 때까지 []를 포함하여 제3항의 예외 규정(“[3. 이 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일정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국가간의 규범 통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UNCITRAL의 규범으로서 개별 규정에서 각국의 법률에 의한 적용범위의 차별화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규정의 적용범위는 가능한 국가간 통일을 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보”의 형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존 실체법 체계와의 충돌을 고려한 적용범위의 문제는 제2조의 적용제외 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용제외

제2초안은 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국내법 외에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금융증서의 범위에 대하여 “주식의 전자적 등가물” 개념에 대한 제4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주식, 사채, 금융파생상품 등을 명시하였다. 제48차 회의에서도 적용제외 범위에 대

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제2초안에 규정되었던 금융증서(financial instrument)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증권 외에 ‘기타 투자 증서’라고 하는 일반적 예외의 범주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였다. 한편, 전자양도성기록규정안의 최종적인 입법형태가 조약(treaty)인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의 제네바협약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3항에 제네바협약들의 적용대상인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를 적용제외하기 위한 규정을 [] 안에 마련하였다.

전자양도성기록규정안의 취지와 기존의 규범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본 것처럼 최종적인 입법형태가 조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제네바협약들의 현대화 및 온오프라인에 대한 통일적 규범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 안에 마련된 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정 의

규정안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에 대하여 제4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제2초안에서는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 화체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제48차 회의에서도 전자양도성기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1) transferability, (2) entitlement, (3) performance of obligation의 3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 “그 소지자에게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

전자양도성기록을 정의하면서 문제되는 점은 기존의 종이 기반의 양도성기록과 조화를 피하여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전자적 환경에만 존재하는 양도성기록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과의 ‘대응’이 중요해지는 반면,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양도성 기록에 공통되는 요건을 일반화하여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추진 목적이 전자적 환경에만 존재하는 증서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종이기반 양도성기록과 동일한 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의규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

5. 당사자자치

제2초안에서는 당사자자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초안의 특정 조문(미정)을 열거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특정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방안이 병렬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당사자 자치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합의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추가되었었다. 그러나 제48차 회의 과정에서 개념정의와 연계하여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6. 서면 및 서명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으로서 서면 및 서명 요건을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전자계약협약 제9조의 형식요건 규정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기능적 동가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다만, 전자계약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현(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는 반드시 그러한 의사표현이 수반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²¹⁾ 제48차 회의에서는 제2초안에서 고려하였던 ‘communication’

21) A/CN.9/797, para. 37.

이나 ‘electronic record’의 개념은 삭제하고 전자양도성기록 내의 정보에 대한 향후 참조를 위한 접근가능성의 요건으로 수정하였다.

7.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은 기능적 등가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규정들로서 규정 방식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제안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3가지 안이 제3초안에서 제시되었다. 즉, A안은 원본, 유일성, 완결성을 각각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식, B안은 원본을 규정하면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규정으로서 유일성과 완결성에 관한 규정을 각각의 항으로서 하여 단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 방식, C안은 B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정에 원본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유일성과 완결성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따르되, 유일성이나 완결성을 비롯하여 정정이나 통합, 분할 등에서도 다뤄지는 신뢰성 기준일 일반화하여 하나의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8.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전자양도성기록 제도를 각국이 운용하는 중에 규정안으로 인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발생 시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지만, 한편으로는 규정안이 각국이 부가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15조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2초안 제15조는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정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즉, 제1항은 실체적 정보(substantive information), 제2항은 운용과 관련된 정보(operation information)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초안 제16조는 실체적인

정보요건으로서 기존의 실체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외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부가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제17조는 실제적인 정보 외에 기술적 혹은 관리적 측면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정보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9.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제3초안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전자계약협약 제10조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규정하였다. 전자계약협약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전자계약협약이 제네바협약들의 적용대상을 그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으로 보인다.

10. 복수 원본의 발행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는 양도성 증서의 복본 혹은 복수 원본의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본의 전자적 발행을 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제3초안에서는 복수 원본의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제49차 회의로 넘겨졌다.

제49차 회의에서는 복수 원본의 발행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1) 복수 원본이라는 점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하며, (2) 이를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복수 원본 발행 시에 복수 원본이 발행된 효과에 대한 진술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11. 점유 및 지배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에 대하여, 제2초안은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고 규정하였다. 종이 기반의 양도성기록의 점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매개개념으로서 ‘지배(control)’이라는 용어가 활용되었다. 제2초안 제17조 제1항은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 그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양도성기록 상에 사실상 권한을 가지는 자][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대상이 되는 자]로 신뢰할 만 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제17조 제2항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과 완결성이 확보되는 상태로 보존, 유지 및 이전되는 경우에 지배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17조는 미국의 UETA 및 UCC 제9편에 규정된 ‘control’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미국의 강력한 주장을 바탕으로 UCC의 세이프하버와 유사하게 규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1안: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de facto control 삽입하여 통합
- 제2안: 제17조 제1항만 수정(de facto power 삭제 여부 논의)
- 제3안: 제16조와 제17조 제1항 통합하되, [de facto control] 형태로 []를 삽입

이러한 논의에 따라 마련된 제3초안에서는 제18조 점유 규정에서 점유와 지배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신뢰할만한 방법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고 규정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점유는 전자양도성기록에서는 사실상 지배를 통하여 충족되며, 제2항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부터 소멸시까지 지배가 수반됨을 선언하였다. 한편, 제19조에서는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의 신뢰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배 요건으로 유일성 및 완결성의 유지, 지배하는 자의 식별 및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X안과 단순히 무권한 접근 및 이용 방지와 완결성 확보라는 신뢰성 그 자체만을 규정하는 Y안이 제시되었다.

12. 교부 · 제시 및 배서

제2초안은 기존에 교부와 제시에 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다루던 것을 구분하여 각국의 실체법에서 교부나 제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이전하거나 지배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배서의 경우에도 회원국의 실체법이 배서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 규정안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하여 서면성과 서명성을 갖추면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2초안의 입장은 제3초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배서의 경우에는 배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서][배서할 의사]와 관련된 정보가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되고][포함되고]”라고 문구를 추가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적 배서 방식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였다.

13. 재발행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와 전자양도성기록 사이에서 자유롭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교체가 이

루어진 후에도 다시 원래 매체로 재발행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24조에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3초안 제26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교체가 이루어진 후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을 규정하는 제26조와는 별개로 교체가 아니라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 재발행받을 수 있도록 제25조에서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의 재발행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재발행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14.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

외국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국제적인 승인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31조에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무차별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2초안은 국제사법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적인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기존의 국제사법 규정의 유효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제3초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차별금지의 전제로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수준이 갖춰진 경우를 요구하는 문구가 제3초안에서 추가되었다. 국제적인 전자양도성기록의 유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II. 제49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1. 규정안의 구성 체계

제49차 WG IV의 논의결과가 반영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²²⁾(이하 ‘규정안’ 혹은 ‘제4초안’이라 함)은 5개 영역, 총 33개 조문으로 구

22)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A/CN.9/WG.IV/WP.130,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는 A/CN.9/WG.IV/WP.130/Add.1 참조.

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일반(General), 전자거래 규정(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 기록의 국경간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규정으로서의 규정안의 적용범위, 적용 제외, 정의를 비롯하여, 일반원칙으로서 해석 기준, 당사자 자치, 정보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전자거래 측면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서면, 서명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하여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지만, 논의 결과 원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본 규정은 삭제되었다.²³⁾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대응하여 전자양도성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전자기록,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 일반 신뢰성 기준,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대한 동의, 복수 원본의 발행, 실체적인 정보요건, 부가정보, 점유, 지배하는 자의 추정/간주, 교부, 제시, 배서, 이전, 정정, 재발행, 교체, 분할 및 통합,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 전자양도성기록의 담보, 보관 등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는 그 역할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국경간 승인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비차별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5개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제49차 WG IV 회의에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23) A/CN.9/WG.IV/WP.130, para. 48.

2. 적용범위

규정안은 모든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되도록 피하고 있다 (제1조).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제3조의 정의 규정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전자양도성기록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제2조에서 규정안의 적용제외를 규정하면서 투자증서 (investment instrument)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적용제외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독자적인 법체계가 발달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도 적용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안에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에 따라 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3. 정 의

가.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규정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개념이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이다.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규정안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개별 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기존 논의를 통하여 4가지 안²⁴⁾ 중의 하나를 선택

24) 제47차 WG IV 회의에서 논의된 4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제1안은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와 동일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기록(an electronic record that is capable of performing the same [evidentiary] functions as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제2안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의 전자적 등가물 (the electronic equival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y electronic record that is capable of performing the same functions as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제3안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증명하고, 채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권리가 전자 기록의 이전의 수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전자 기록(an electronic record evidencing a right to claim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in which the obligor expressly or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었다. 제4초안의 정의에 따르면, “그 지배하는 자에게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합의된 바에 따르면, 전자양도성기록은 ‘양도성’, ‘권리화체성’, ‘전자기록성’을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한다.²⁵⁾ 이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양도성(transferability)’이다. 종래 종이 기반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통성(negotiability)’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도 유통성을 필수 요건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실무작업반은 종래 UNCITRAL의 규범의 특징과 조화시킨다는 측면과 유통성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와 관련되는 실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안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다 중립적 용어로서 ‘양도성’을 요건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규정안의 내용에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작업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면서도 향후 논의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나. 지배(control)

지배(control)이라는 개념은 종래 종이 기반의 유가증권의 점유를 전자적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²⁶⁾ 이는 전

implicitly states that that right may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y means of the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제4안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해당 기록에 합체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a record used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s incorpor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itself)’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4가지 안 중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제4안이 가장 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단 제4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A/CN.9/WG.IV/XLVII/CRP.1.

25) 정경영, 전계논문, 142면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 요소로 “권리(채무)화체성, 권리양도의 수단성, 전자기록성”을 들고 있다.

26) 이 개념은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및 연방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15 U.S.C.

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3초안(이하 “제3초안”이라 함)²⁷⁾ 제3조 정의 규정에 없던 것을 제4초안에서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실체법 체계에 대응하여 제4초안 제18조에 ‘점유’ 규정을 두면서 그와 연계한 기초 개념으로서 신설한 것이다.²⁸⁾ 이에 의하면, 지배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사실상 처리하거나 처분할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²⁹⁾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논의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여지도 있다.

다. 소지인(holder)

제3초안까지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holder)이라는 개념을 제3조 정의규정에서 정의한 후 규정안 전체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제49차 WG IV 회의에서 논의 결과 소지인이라는 단어는 실체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지배하는 자(person in control)”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³⁰⁾ 이에 따라 제4초안에서는 소지인에 관한 정의규정이 삭제되고, 본문에 규정된 소지인이라는 용어는 모두 ‘지배하는 자’로 교체되었다.

4.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제7조에 규정된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논의 없이 현재 규정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즉, “전자양도성기록

§7001 et seq.)에 규정된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27)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A/CN.9/WG.IV/WP.128,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는 A/CN.9/WG.IV/WP.128/Add.1 참조

28) A/CN.9/WG.IV/WP.130, para. 23.

29)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de facto power to deal with or dispose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power to factually deal with or dispos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rol in fact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30) A/CN.9/804, paras. 84-85.

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증서나 문서가 전자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기본 규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5. 서 면

제3조에 규정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정의 규정을 통하여 이미 기능적 등가성은 암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에 반하여 실체법 상의 서면 요건에 대한 기능적 등가성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서 서면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어서, 추후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정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종이기반의 양도성 증서나 문서와 전자양도성기록과의 기능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유가증권 분야에서의 전자기록의 문서성의 확보인데,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능적 등가성의 법적 기초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서면성에 관한 규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서 명

제9조에 규정된 서명 규정은 실체법상의 일반적인 서명요건을 다루어 기능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서면성 규정과 함께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등가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기존 규정안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서명요건이라는 맥락에서 “전자기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 9 조(서명)

법이 자연인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

- (a)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
- (b)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 (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
 - (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

서명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며, 제49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전자기록에 관한 일반적인 서명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

가. 개 관

제3초안에 규정되어 있던 원본성, 유일성, 완결성에 관한 규정은 제 49차 회의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다. 제49차 회의에서는 이에 관하여 3가지 규정안이 검토되었다. 즉, A안은 원본, 유일성, 완결성을 각각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식, B안은 원본을 규정하면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규정으로서 유일성과 완결성에 관

한 규정을 각각의 항으로서 하여 단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 방식, C안은 B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정에 원본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유일성과 완결성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따르되, 유일성이나 완결성을 비롯하여 정정이나 통합, 분할 등에서도 다뤄지는 신뢰성 기준일 일반화하여 하나의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논의 결과 기능적 등가성 원칙의 주요 목적은 이행 청구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B안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B안 제10조에 포함된 일정 요소들은 지배(Control)와 관련된 규정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아울러 A안과 C안에 규정된 일정 요소, 특히 C안의 제11조에 규정된 일반 신뢰성 기준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이해가 이루어졌다. B안 제10조의 위치와 관련하여, Section C로 이동하자는 견해, 유일성과 완결성은 Section C에 두고 일반적인 형식 요건 규정은 Section B에 두자는 견해, 유일성은 지배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양하게 주장되었지만, 논의 결과 Section B의 규정들은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하는 것이고, Section B는 그러한 맥락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나. B안에 대한 검토

제3초안 제10조(3)(a)의 기초가 되었던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8조에 포함된 완결성(integrity) 관념은 그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변화들을 정형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던 계약들과 같은 문서들에 적합한 반면,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변화를 수반한 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완결성 관념이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에 포함된 정보와 그 이후 그 기록의 폐지 및 보관 시까지 이루어진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를 보존할 능력

을 기초로 할 수 있도록 제10조(3)(a)가 재성안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한편, 또 다른 견해는 “authorized or technical change”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적 속성을 가진 변화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기술적 속성의 변화는 법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안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와 달리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와 합법적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이 때 합법적 변화 또는 변경(legitimate change)은 실체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반면,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authorized change)는 전자양도성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자양도성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보호하고 무권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는 실체법 하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고려되는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훔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변화).

이상과 같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B안 제10조(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cluding any [authorized]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야기되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를 포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한다). 아울러 “권한을 부여받은”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에 합의하였고, 기술적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8조(3)(a)를 고려하고,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에 관한 전자양도성기

록 규정안 제30조에 대한 참조가 제10조(3)(a)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10조(3)(b)는 현행 규정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본성에 대한 검토

전자적 환경 하에서 오프라인 상의 원본성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이기반 양도성기록의 원본(original)의 기능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내 실체법 하에서 “원본” 개념이 필수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네바협약들을 비롯한 국제법 문언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원본이라는 표현이 전자적 환경 하에서 복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되었다. 한편, 지배(control)라는 개념은 이행 권한이 부여된 자와 지배의 객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여, 원본 개념을 위한 기능적 등가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실체법이 이행청구를 위하여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그 부재시의 효과를 규정하기 때문에 기능적 등가성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는 이행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만을 확인케 해주는 반면, 이행 객체의 확인은 원본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등가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립되는 견해가 주장되었지만 논의 결과, 전자양도성 기록 규정안에 “원본”의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A안의 접근방식을 취하되, (i) A안의 제10조는 삭제하고, (ii) A안의 제11조는 [] 속에 넣어서 향후 점유 및 지배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기로 하며, (iii) B안의 제10(3)의 관점에서 합의된 수정

안(“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야기되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변화를 포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어야 한다”)을 반영하여 A안의 제12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제11조 일반신뢰성기준

일반신뢰성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었다. 일반신뢰성기준 규정을 두게 되면, 일반신뢰성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뢰성기준을 포함하는 각각의 규정들이 이미 해당 맥락에서 필요한 신뢰성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일반규정으로 일반신뢰성기준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하여 C안 제11조의 삭제를 지지하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한편, 일반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요소 및 일반신뢰성기준의 의미에 대한 안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일반신뢰성기준 규정은 폐쇄시스템 하에서는 당사자자치로서 일반신뢰성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만,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는 일반신뢰성기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C안 제11조(2)에 “직원의 질, 충분한 재정능력과 책임보험, 보안위반에 대한 고지 절차의 존재”를 포함하여 논의를 계속함. 일부 견해는 추가로 “신뢰할 만한 감사 절차”를 규정할 것을 제안되었다. 다만, 이러한 견해를 따라 일반신뢰성기준을 조문화하더라도 기술중립성이 확보되도록 성안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안 제11조가 매우 상세하게 검토되었으며, 일반신뢰성기준 규정의 목적은 기술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폐쇄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11조(2)는 일반

신뢰성기준을 위한 관련 요소를 더 잘 특정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 신뢰성 요건을 완화하면 소송을 증대시키고 법적 예견 가능성을 방해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일반신뢰성기준이 규정되면, 동 규정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위한 모든 시스템 제공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견해는 특정 기능적 등가성 규정들이 신뢰성 기준으로서 “as reliable as appropriate”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시스템 신뢰성에 관한 가능한 일반 원칙으로서 수정된 제11조(2)를 더 검토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울러 신뢰할만한 방법을 규정하는 각각의 조항을 위한 특정 기준의 채택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제4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10조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유효한 전자기록]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이용을 요구하거나 그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이용된다면, 그 요건은 [하나 이상의] 전자기록의 이용에 의하여 충족된다:
(a) 그 전자기록을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이용되는 [유효한] 전자기록으로서 확인하기 위하여;
(b) 그 전자기록이 그 생애주기 동안 지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c)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a)를 충족한다;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b)를 충족한다; 만일 [제11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c)를 충족한다;”]
“제1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
발행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2. [제1항][초안 제10조 (c)]의 목적을 위하여:

- (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통신, 저장 및 표시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제외하고][초안 제30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생겨나는 [법적으로 관련된][권한을 부여받은] 변경을 포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하며, 그리고
- (b)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제12조 일반 신뢰성 기준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를 위하여 방법이 신뢰할만한가 또는 신뢰할만한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 (a) 데이터 완결성의 확보 정도;
- (b) 시스템에의 무권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할 능력;
- (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
- (d) 독립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정도;
- (e) 그 방법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독 기구, 인정 기구 또는 자발적 체제에 의한 공표의 존재; 또는
- (f) 기타 관련 사항.

8. 점유(possession)와 지배(control)

가. 제18조의 표제

제18조의 조문 제목과 관련하여, “점유” 대신 “지배”가 그 내용을 반영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지배”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제18조의 목적이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기록의 전자적 환경으로의 전이를 위한 기능적 등가성의 실현에 있고 제20조(교부) 및 제21조(제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을 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점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데 결론이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조문 제목은 “점유”를 유지하기로 하고, 제18조 본문에서 “[사실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지배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조 정의 규정 중 “지배”의 정의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고, 지배가 사실문제(factual nature)라는 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배의 정의 속에 배타성(exclusivity)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되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나 전자양도성기록의 중계자의 기능은 지배의 관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후에 두 가지 관념에 대한 양해가 도출되었다. 즉,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다루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을 의미하며, 전자양도성기록을 다루거나 처분하기 위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나 중계자의 권한은 지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규정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나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의규정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지배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규정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미뤘다.

제18조(2)는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발행시부터 폐지 혹은 효력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는 점을 규정한 유일한 규정이지만, 전자양도성기록이 반드시 그 전 생애주기 동안 지배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토큰 시스템에서 전자양도성기록 토큰이 분실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18조(2)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capable of [control] [being subject to control] by [a single] [one or more] person during its life cycle.]”(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생애주기 동안 [1인][1인 이상]의 [지배가][지배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8조(2)의 위치와 관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규정, 유일성 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8조(2)의 내용은 [] 속에 포함되어져서 추후 논의에 따라 이동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4초안 규정안이 마련되었다.

<p>제18조 점유</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p> <p>(b) 그 이용된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다:</p> <p>(i) 관련 약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의 측면에서 그 전자양도성 기록이 [만들어진][생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할만하다; 또는</p> <p>(ii) 그 자체 또는 추가 증거와 함께 위 (a)에서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사실상 증명된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생애주기 동안 [단일한] [1 또는 2 이상의]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될][지배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p>
--

다.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의 신뢰성

제3초안 제19조 X안 및 Y안은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논의를 위하여 제안되었다.

“Where the law requires the possess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ossess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rough control] if:

- [(a) A method is used to establish control; and]
- (b) The method used is either:

-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cre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
-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of control] [to have been reliabl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하여][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

[(a) 방법이 지배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b) 이용된 방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i) 관련 약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 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만한 경우
- (ii) [지배 기능을 수행하였다고][신뢰할만하다고] 그 자체로서 또는 추가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

또한 배타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배타성은 이미 지배의 관념 속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되었다. 배타성의 규정 방식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지배의 배타성을 규정하는 방안, 지배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방안,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 이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배에 대한 깊은 논의 후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i) 첫 문구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하여]에서 []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유지하며, (ii) (a)는 []을 삭제하여 그 내용을 유지하고,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방법이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되고”로 규정하고, (iii) (b)(ii)는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그 자체 또는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위 (a)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사실상 증명된”)으로 수정하며, (iv) (b)(i)에 규정된 “created”는 “generated”로 수정되거나 혹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유형의 목적을 위하여 신뢰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고, 나아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후에 유일성에 관한 A안의 제11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Draft article **. [Operative electronic record]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1. Where the law requires the us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its absence, that requirement is met by the use of [an] [one or more than one] electronic record if a reliable method is employed:

- (a) To identify that electronic record as the [operative] electronic record to be used a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o prevent the unauthorized replication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 (b) To render that electronic record capable of being subject to control during its life cycle; and
- (c) To retain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2. A method shall satisfy paragraph 1, if …“

(“제**조

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정하거나 그 부재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된다면 [하나][하나 이상의] 전자기록의 이용에 의하여 충족된다:

- (a) 그 전자기록이 전자양도성기록으로서 이용되고 그 전자양도성 기록의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되는] 전자기록으로서 그 전자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 (b) 그 전자기록이 생애주기 동안 지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 (c)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다음 ...에 따르면, 방법은 제1항을 충족한다.”

- 새로 제안된 규정의 위치와 관련하여 지배에 관한 규정에 근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Section C에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제4초안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제10조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유효한 전자기록]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이용을 요구하거나 그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이용된다면, 그 요건은 [하나 이상의] 전자기록의 이용에 의하여 충족된다:
(a) 그 전자기록을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이용되는 [유효한] 전자기록으로서 확인하기 위하여;
(b) 그 전자기록이 그 생애주기 동안 지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c)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a)를 충족한다;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b)를 충족한다; 만일 [제11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c)를 충족한다;”]

9. 제 시

제21조의 규정은 제시의 기능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하려는 의사와 같이 부가적인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론적으로 제21조를 [] 속에 포함하여 유지하되, 제시의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10. 배 서

종래 오프라인에서는 증서의 뒷면에 배서를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존재했었고, 이에 따라 제22조는 배서의 양식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내법이 종이 기반 환경에서 배서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22조는 그러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요건과 관계없이 배서 관념의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요건을 규정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 형식 요건을 규정하게 되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으로부터 다른 요건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22조의 첫 번째 “endorsement” 이후에 “in any form”을 추가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the endorsement]에서 []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the intention to endorse](배서의사)”를 삭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되고][포함되고]”라는 표현은 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두 개의 [] 사이의 선택은 서로 상호간에 배타적이어서는 안되고 관련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제4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22조 배서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형식에서 배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거나]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배서와 관련된 정보가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되고][포함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제8조 및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

11.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점유, 교부 및 배서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1항을 삭제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12.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합법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에 관한 원칙은 [] 속에 포함시켜서 삽입하고, 향후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 3 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의 핵심 쟁점 분석

I.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범위

1. 규범의 이중성 지양

UNCITRAL이 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오프라인 국제거래에 적용되던 CISG를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국제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했던 유가증권에서 더 나아가 전자적인 양도성 문서도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정안 논의의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체법 규범과 다른 새로운 전자양도성기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기존의 실체법 규범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자적인 방식을 그 틀의 연장선상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만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실체법 규범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새로운 전자양도성기록 법체계의 도입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들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기존 법규범과의 충돌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실체법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규정이 전자양도성기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도록 규정안을 마련한다면 충돌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실체법 규범과 규정안에 담기게 되는 실체법적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떠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종래 실체법 규범이 적용되고, 온라인 상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규범이 이중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범의 이중성(duality of regimes) 문제는 기존의 전자계약협약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의 경우에 UNCITRAL은 규범의 이중성 문제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있어서 기술적 쟁점과 실체법적 쟁점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함에 따라 제기되는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만 실체법적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CISG와 같은 다른 규범에 맡기도록 하였다.³¹⁾ 이러한 규율방식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규범의 이중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거래 분야에서만 특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전자계약협약에 둬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CISG와 같은 종래의 실체적 규범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자거래 분야에 대한 통일적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오프라인에 초점이 맞춰졌던 CISG를 실질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제매매계약에서의 법적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자계약협약³²⁾의 접근방식은 현재 논의 중인 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³³⁾ 실무작업반의 논의과정에서도 실체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³⁴⁾ 이에 따라 제1초안에서부터 제4초안에 이르기까지 규범의 이중성을 지양하고 실체법적 색채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제1초안 제16조 제5항에 규정되었던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점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31) UNCITRAL,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para. 54.

32) 전자계약협약은 환어음, 약속 어음,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가능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계약협약 제2조 제2항. 이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3) A/CN.9/768, para. 14.

34) A/CN.9/797, para. 7.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³⁵⁾ 제3초안 제3조에 규정되었던 소지인(holder)이라는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소지인이라는 개념은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실체법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4초안에서는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지배하는 자(person in control)’로 수정되었다.³⁶⁾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비추어 향후의 WG IV의 논의 과정 혹은 최종적인 규정에서는 종래의 실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체법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종래 실체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특유한 사항만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 적용범위 - 다른 협약과의 관계

규정안의 논의는 부득이 기존에 UNCITRAL에서 채택한 다양한 국제규범의 논의의 틀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기존 규범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 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상충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UNCITRAL 규범은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하여 통일법을 제정하는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Geneva, 1930))”과 “수표에 관하여 통일법을 제정하는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Cheques (Geneva, 1931))”(이하에서 두 협약을 “제네바 협약들”이라 함)이다.

제네바협약들의 규정은 종이 기반 환경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문제는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들이 전자적인 형태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제네바협약들 체계 하에서 도입할 수 있을

35) A/CN.9/768, para. 68.

36) A/CN.9/804, para. 85.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규정안의 적용범위, 그 최종적인 형식,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에 의한 최종적인 문구의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규정안의 최종적인 입법형태가 모델법(Model Law)에 불과하다면, 제네바협약들의 당사국은 그 모델법 규정을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네바협약들 상의 종이 기반 규정들이 종이기반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협약의 당사국은 각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는 전자적인 형태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도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전자적인 형태의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제네바협약들을 수정하거나 제네바협약들을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³⁷⁾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해석 하에서 제네바협약들을 위반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 기존 제도와 별개의 독립된 전자증서 제도로써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³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네바협약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네바협약들을 들여다보면 종이 기반의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이용을 암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이 형식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³⁹⁾ 더욱이 제네바협약들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네바협약들이 전자적 매체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제네바협약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제네바협약들을 보충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전자

37) A/CN.9/WG.IV/WP.125, para. 22.

38) 電子記録債權法(平成19年法律第102号).

39) A/CN.9/WG.IV/WP.125, para. 24.

계약협약에서도 활용되었다. 즉,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에 CISG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CISG를 위반함이 없이 전자적인 국제거래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규정을 두었다.⁴⁰⁾

UNCITRAL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국제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맞게 법을 발전시켜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즉, 종이기반 문서의 이용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적 증가성을 수립하는 것은 WG IV의 지속적인 목표이다.⁴¹⁾ 결국 종이에 기반한 제네바협약들의 규정에 대한 수정 없이 기존의 양도성 증서를 전자적 환경에 맞게 유통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증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가적인 규정을 두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제네바협약들과의 잠재적인 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로 인하여 불확정적이긴 하지만⁴²⁾ 제4초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제네바협약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규정안의 적용범위에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배제함으로써⁴³⁾ 규정안의 최종 법형식이 협약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제네바협약들을 비롯한 다른 협약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⁴⁴⁾

40) 전자계약협약이 기존 CISG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네바협약들 및 Hamburg Rules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A/CN.9/527, paras. 27-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WG IV의 논의는 기존 제네바협약들의 현대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41) A/CN.9/768, para. 21.

42) 제4초안은 제2조 제3항을 [] 속에 넣어 두고 향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43) A/CN.9/797, para. 20.

44) A/CN.9/797, para. 11.

II.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와 지배

1. 규정안 상의 점유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하여 WG IV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중요한 것이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점유(possession)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에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점유 관념에 따라 규율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유형적인 실체가 없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전통적인 점유에 대응하는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제시, 교부, 양도 등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은 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통적인 점유와 기능적 등가물을 고안하여 대등한 기능을 인정하게 되면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도 종래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와 대등하게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WG IV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다.

가. 점유와 지배

규정안은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가 없는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는 때에는 ‘신뢰할만한 방법’ 또는 ‘지배를 사실상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설정함으로써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지배라는 관념은 WG IV에서 처음 고안한 개념은 아니고,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제16조에서 점유의 대체물로서 활용했던 개념이다. WG IV는 기능적 등가성 확립, 기술 중립성 확보 및 실체법에 대한 개입 지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여, 가능한 점유에 대한 실체법적 요소는 배제하면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점유를 실

현하려는 방안으로 지배라는 관념을 사용하였고,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 지 배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조 정의 규정 중 “지배”의 정의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지배(control)라는 개념은 종래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대한 점유를 전자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⁴⁵⁾ 이는 제3초안 제3조의 정의 규정에 없던 것을 제4초안에서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실체법 체계에 대응하여 제4초안 제18조에 ‘점유’ 규정을 두면서 그와 연계한 기초 개념으로서 신설한 것이다.⁴⁶⁾ 이에 의하면, 지배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사실상 처리하거나 처분할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⁴⁷⁾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 안에 포함되어 있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향후 논의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여지도 있다.

제4초안 제18조에 따르면,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한다. 즉, (a)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그리고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이거나 (b) “그 이용된 방법이 관련 약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의

45) 이 개념은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및 연방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15 U.S.C. §7001 et seq.)에 규정된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46) A/CN.9/WG.IV/WP.130, para. 23.

47)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de facto power to deal with or dispose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power to factually deal with or dispos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rol in fact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측면에서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만들어진][생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할만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 또는 추가 증거와 함께 위 (a)에서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사실상 증명되는” 경우에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이외에 제4초안은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생애주기 동안 [단일한] [1 또는 2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지배 될][지배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발행시부터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지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⁴⁸⁾ 이처럼 제4 초안 제18조에 의하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핵심 개념으로서 “지배(control)”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규정안에 따르면, 지배(control)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사실상 처리하거나 처분할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한다.⁴⁹⁾

다. 지배의 간주

UETA는 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세이프하버 기준(Safe Harbor Standards)을 설정하고 있다.⁵⁰⁾ UETA에 따른 전자기록에 대한 지배는 종이에 대한 점유의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한다.⁵¹⁾ 이러한 UETA의 규율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안도 지

48) 제3초안에서는 “지배에 따른다(... is subject to control ...)”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자양도성기록이 전 생애주기 동안 반드시 지배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토큰 시스템 하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이 분실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은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 수 있어야 한다(... shall be capable of)”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A/CN.9/804, para. 61.

49) 제4초안 제3조. 지배의 정의를 둘러싸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4초안에서는 모든 대안이 [] 속에 들어있으며, 향후 논의에 따라 수정 혹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50) UETA의 양도성기록의 지배에 대한 상세는 정경영, 전계논문, 153-157면 참조.

51) 더 자세하게는 UETA 제16조 상의 지배는 약속어음이나 양도성 권리증서의 교부, 배서 및 점유의 대체물로서 역할 한다. UETA Section 16, Official Comment 3.

배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4초안 제19조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즉, “(a)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그를 [지배하는][지배를 주장하는][직간접적으로 그 전자기록 상의 지배를 가지는] 자로서 확인한 경우; 그리고 (b)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그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게 된다. 이는 UETA의 세이프하버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UETA나 규정안은 모두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지배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신뢰성 있게 확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⁵²⁾

2. 우리 법상의 점유 관념

가. 소지와 점유

증권적 채권과 관련하여 「민법」은 ‘점유’라는 용어 대신 일부 유형의 경우에 ‘소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⁵³⁾ 이는 물건에 대한 점유의 효과로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 체계와는 별도로 권리가 화체되어 증권과 함께 양도가 이루어지는 증권적 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소지’라는 개념은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사실상의 지배권내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민법상 점유는 이러한 소지 상태에 더해서 ‘소유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각(주관설)과 단순히 점유설정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시각(객관설)이 대립되었지만 우리 학설은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객관설의 입장에 따르면 점유설정

52) Ibid.

53) 소지 외에 ‘교부’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다.

54) 증권적 채권은 물건인 증권을 통해서 유통되기는 하지만 그에 화체된 권리의 이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민법상 점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의사만으로 족하지만, 그러한 의사는 소지라는 사실상태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거나 분리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소지와 점유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소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은 종래 민법 상의 점유에 대한 해석기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⁵⁵⁾

나. 점유의 의의와 요건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한다(민법 제192조 제1항). 점유의 성립에 일정한 점유의사를 요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실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인 점유설정의사만으로 족하다. 판례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⁵⁶⁾고 판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일반적으로 점유라는 개념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민법 상 점유 및 점유권 개념이 가장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2편(물권) 제2장에서 점유권을 규정하면서 점유에 대하여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민법 제192조 제1항).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권은 본권인 ‘점유할 권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은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증권을 통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특수한 형태로써 별도의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

56)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것

사실상 지배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⁵⁷⁾ 이러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⁵⁸⁾

(2) 점유설정의사의 존재

민법은 점유의 요건으로서 사실상 지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실상 지배를 하려는 자연적 의사로서의 점유설정의사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⁵⁹⁾⁶⁰⁾ 점유설정의사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또한 점유설정의사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고 개개의 물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57)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1957, 122면 이하 참조.

58)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59) 광윤직, 민법총칙,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142면; 김상용, 민법총칙, 신정판 증보, 법문사, 2003, 265면;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287면. 대법원 1997.7.11. 선고 97다14040 판결.

60) 이에 대하여 민법 제192조 제1항이 명문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설정의사도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고상룡, 민법총칙, 진정판, 법문사, 1999, 186면;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제3판, 2004, 328면.

3. 검 토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 영역에서 점유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상 점유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통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직접적인 사실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⁶¹⁾ 이처럼 점유의 관념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전제는 ‘물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종래의 일반적인 물건 관념에 의하면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무체물에게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⁶²⁾ 또한 점유요건으로서의 ‘사실상의 지배’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률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에 대하여 사용되는 ‘소지’는 물건이 아니라 증권적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종래 점유의 관념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증권적 채권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적 채권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적 채권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한편, 규정안은 점유에 대하여 직접적·실체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점유의 의미나 판단에 대하여는 실체법에 맡기고 있다. 다만,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도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서의 점유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컨대 지배를 설정하기 위

61) 점유보조자와 같은 타인을 통하여 점유하는 것과 같이 점유의 관념이 물리적·가시적인 물건의 지배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상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황적인 집필대표, 주석민법 II(물권법, §§185-372), 1992, §192.

62) 이에 대하여 일반적·총칙적 의의를 바탕으로 물건 개념의 확대와 그에 따른 물건 요건론의 변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최경진, “물건요건론 소고”,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04. 6), 49-82면 참조.

한 신뢰성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인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법 상의 지배를 전자양도성기록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지배’라는 관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지배’에 대하여도 사실적 관념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기능적 등가성의 확보와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UETA가 취한 방식⁶³⁾과 마찬가지로 지배의 간주에 관한을 제4초안 제19조에 규정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법상의 소지 혹은 점유 개념과 규정안 상의 점유를 검토하면, 규정안 상의 점유의 매개 개념인 지배도 ‘사실 상의 지배’로서 이해되어 우리 민법 상의 점유의 관념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규정안 상의 점유 개념은 실체법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상의 소지 혹은 점유 개념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다만, 우리 법상의 점유 개념은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의 의의를 ‘유체물’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한 전자양도성기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법에서도 유체물인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대한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점유 개념 혹은 이를 대체하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혹은 전자양도성기록에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나 요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우리 민법 상 점유가 사실 관념으로서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규정안에서와 같이 지배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더라도 점유 요건인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환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전자적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계약에 관하여 실체법적 규율은 여전히 민법에 의하면서도, 기술

63) UETA §16(c) 및 E-SIGN §201(c)에서 세이프하버 기준(Safe Harbor Standards)을 규정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배를 간주하게 된다.

적 측면에서의 특수한 부가적인 기준은 기본법에 규정을 두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정안 상의 점유나 지배의 기본적인 관념은 현행 민법상의 소지나 점유 관념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향후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국내 규범을 조화시킬 필요가 생겨나는 때에는 점유의 전자적 등가물 혹은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등의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법상으로도 점유는 불확정 개념이고 사실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안의 지배 간주 규정(제19조)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의 여지를 두기 위하여 예시적인 열거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하여 비교 검토를 상정할 수 있는 국내 법률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본 수단인 전자문서와 관련된 법률이나 증권적 채권과 관련된 법률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문서에 관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서명법」, 증권적 채권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전자약속어음에 관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채권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기·등록을 이용하여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법률과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을 비교해 보고, 국내에의 영향력 분석 혹은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겠다.⁶⁴⁾

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의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고 종이문서와의 기능적 동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전자문서를 바탕으로 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은 특히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계약협약의 기본 내용을 수용하여 국제적인 조화도 꾀하고 있다.⁶⁵⁾

64)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과 국내법과의 비교 분석에 대하여는 선행연구로서 최경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 참조. 이 연구는 위 선행연구보고서의 기본적인 해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1초안부터 제4초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상세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새롭게 서술하였다.

65) 전자계약협약과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전자계약협약과 기본법의 비교법적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에 적용된다. 동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⁶⁶⁾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승인한 바탕 위에서 전자문서의 기능적 등가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제1항),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5조나 전자계약협약 제8조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을 구체화하였다(동법 제4조제2항). 이외에 전자문서의 보관(동법 제5조), 송수신의 시기 및 장소(동법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 대하여 규정안은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되고,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본 수단인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적 유효성 승인(제4초안 제7조), 서면(제4초안 제8조), 서명(제4초안 제9조)에 관한 기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본법은 그 적용범위를 전자문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검토에 대하여는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제1호(2010), 77-104면 참조.

66) 전자계약협약 제5조와 같은 형식요건이 기본법에는 없기 때문에 동법 상의 전자문서는 전자계약협약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다루어진다. 형식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종이문서와의 기능적 등가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향후 법 개정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최경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정보법학』, 제15권제1호(2011), 56-58면. 이준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현안분석 2013-07), 한국법제연구원, 2013, 99-101면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엄격한 형식요건을 요구하여 종이 기반의 서면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분야가 유가증권 분야이다. 때문에 기본법이 규정안과 직접 충돌이 발생하지도 않고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일반법적 측면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을 수용하는 경우에 기본법의 역할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리 양자의 비교법적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양자를 비교해 보면,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유효성 승인에 관하여는 표현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의 형식 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안 상의 서면 규정(제4초안 제8조)은 기본법에는 동일한 규정이 없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4조 제2항이나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써 관계 법령의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서면으로서의 기능을 유사하게 인정하고 있다.⁶⁷⁾ 서명에 관하여 기본법은 「전자서명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 「전자서명법」은 제3조에서 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규정하여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규정안의 서명 규정(제4초안 제9조)에 대응한다. 기본법과 규정안의 관계는 규정안이 따르고 있는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주 63)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문서의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기본법 상에 형식 요건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자계약협약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계약협약의 기본 정신을 수용하고 있는 기본법은 규정안과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규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의 유효성 혹은 기능적 등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전제로서의 형식요건에 관하여는 추후 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II.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며,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목표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전자서명법」은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을 수용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처음 제정된 1999년에는 특정 암호화 기술을 전자서명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후 2001년 개정을 통하여 특정 기술의 강제를 지양하고 기술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이 재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제2조 제2호)를 의미한다. 「전자서명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전자서명 일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유형을 일반적인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제2조 제3호)로 구분하여, 공인전자서명에는 더욱 강력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관하여 법적 유효성을 천명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나아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

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제3조 제2항). 이러한 공인전자서명 외의 일반적인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제3조 제3항). 이러한 법적 유효성 승인 규정 외에 공인인증기관(제2장), 공인인증서(제3장), 공인인증업무(제4장), 전자서명인증정책(제5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안도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시에 활용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고 있다(제4초안 제9조).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일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을 위하여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다면, 전자서명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서명에 관한 규정은 전자양도성기록이라는 맥락에서 일반적인 전자서명의 법적 유효성의 승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제3조와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서 신원확인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의 확정 및 확인 등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의 중요성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논의된다면⁶⁸⁾ 우리 전자서명법과의 상충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민 법

「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어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종래의 증권적 채권의 ‘점유’의 의미와 법적 효과에 대하여도 민법에 따라 규율된다.

68) 실무작업반은 규정안과 관련하여 신원관리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A/CN.9/804, para. 8.

따라서 ‘점유’ 혹은 그 대체물로서의 ‘지배’를 논의하고 있는 규정안은 「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의 실익이 있다.

1. 증권적 채권

「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실체에 있어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어음법」과 「수표법」이 매우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신종 지급결제수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고 있어서 민법 상의 규정이 유가증권에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적 채권의 일반 규정으로서의 「민법」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규정안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양도성기록 일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자사이의 비교는 의미를 가진다.

「민법」상 증권적 채권이란 그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을 필요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을 본질로 하며, 유통성의 확보와 거래안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민법」상 지시채권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전형적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시채권의 양도는 배서와 교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민법 제508조). 배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행하는 기명식배서가 원칙이지만, 약식배서도 가능하다(민법 제510조). 이러한 「민법」상의 배서는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즉 권리이전적 효력과 지시채권증서의 소지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법」상의

배서는 「어음법」⁶⁹⁾이나 「수표법」⁷⁰⁾에서와 같은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소지인이 증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권리없음을 알지 못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그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514조). 또한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15조).

무기명채권은 특정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무기명사채, 상품권, 승차권, 극장입장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지명하는 한편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이들 무기명채권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모두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제523조, 제525조).

이상과 같은 증권적 채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제4초안에 따르면, “그 지배하는 자에게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기록]”⁷¹⁾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도성, 권리화체성, 전자기록성을 갖추면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민법」상 증권적 채권도 채권의 양도성, 권리화체성, 증권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권의 형식에서

69) 「어음법」 제15조에 따르면,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또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0) 「수표법」 제18조에 따르면,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또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처럼 「수표법」은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규정한다.

71) 제4초안 제3조.

만 차이가 있을뿐 동일하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특별법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법」이 규율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요건이나 효과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실체법적 규율을 지양하는 규정안과 충돌한 여지가 거의 없다. 즉, 실체법적으로 ‘배서’나 ‘교부’를 부인하거나 이외에 추가적인 실체법적 요건을 요구하기 보다는 ‘배서’나 ‘교부’와 기능적 동가성을 가지는 조치들을 통해서 실체법과 마찬가지로의 양도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 따라서 규정안으로 인하여 민법상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자적으로 증권적 채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기능적 동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나 조치가 있는 경우에 양도 가능하도록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거나 아니면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규정안을 국내에 수용하는 경우에 「민법」이 예견하지 못했던 전자적 방식의 증권적 채권도 「민법」의 증권적 채권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일반화되었고 오프라인 거래의 많은 부분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적 방식의 증권적 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정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적 형태의 증권적 채권에 대하여 법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자적 방식의 증권적 채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용방법으로는 (1) 「민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증권적 채권을 수용하는 방안, (2) 「민법」상 증권적 채권의 해석을 유연하게 확대하여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 전자양도성기록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과 동시에 전자양도성기록을 종이 기반의 증권적 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

술적 요소나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⁷²⁾ 또는 (3) 「민법」상 증권적 채권은 유체물인 종이 기반의 증권적 채권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증권적 채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정하는 방안⁷³⁾⁷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자문서나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여 입법적 해결을 했던 것처럼 전자양도성기록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적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두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더욱이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의 유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입법적 대안으로 전자양도성기록의 금융 속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소지와 점유

규정안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점유’의 전자적 등가물인 ‘지배’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지 혹은 점유 개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규정안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규정은 담지 않고, 다만 전자적 환경에서

72) 현재 전자거래 혹은 전자계약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법 상 의사표시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전자적인 의사표시나 전자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자적 의사표시나 전자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전자문서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두고 있다.

73) 이 경우에도 기존의 증권적 채권에 관한 「민법」의 실체법적 규정을 그대로 전자적인 증권적 채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거나 혹은 동일한 내용을 전자적인 증권적 채권에 맞게 수정·변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74) 약속어음을 규율하는 「어음법」에 대응하여 전자약속어음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도 동일한 방식이다.

점유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적 환경의 ‘지배’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종래 증권적 채권 혹은 유가증권의 일부 유형에 관하여 ‘소지’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한 「민법」상 점유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양자를 비교해보면, 종이 기반의 증권적 채권의 소지는 사실상 지배상태인 점유와 동일한 개념이고, 규정안 상의 점유나 지배도 사실상 지배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규정안에서 점유라는 개념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점유의 성립과 관련하여 단순한 소지 외에 소유의사와 같은 심소(心素)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안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충돌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로서의 객관적 상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반면 점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실체법 상의 소지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느 입장을 취하건 ‘사실상 지배 상태’를 핵심 요건으로 하는 한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와 소지의 비교도 일부의 증권적 채권의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적 채권 전체의 논의로 확장하여 충돌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증권적 채권에서는 정면으로 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교부나 소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정안에서 일반적 측면에서 점유라는 관념을 도입하는 경우에 물건을 중심으로 점유 관념을 고려하는 우리 법제와 다르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더욱이 규정안은 기존 실체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기능적 등가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와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규정안 상의 점유 규정은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점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부, 배서, 제시에 관한 규정으로써 충분히 기능적 등가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규정안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는 한 우리 법제와의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완전한 정합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래 증권적 채권 상의 관념을 그대로 전이시켜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IV.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전자어음법 상의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⁷⁵⁾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2호). 이러한 전자어음에 관하여는 전자어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에는 “어음법”에 의한다(동법 제4조).

우선 양자의 적용범위를 비교해보면, 규정안은 다양한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반면, 전자어음법은 전자약속어음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규정안이 전자약속어음을 포함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규정안의 논의는 전자어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 어음법 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이는 규정안보다 강화된 규정이지만, 규정안이 국제거래에서의 최소한의 기준(minimum requirement)을 정립하고자 의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보다 강화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법 하에서 일반 전자서명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

75)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동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자어음법 제2조 제4호.

와 같은 간주의 효과만 없을 뿐이고 전자어음의 발행 자체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안과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지 않는 전자어음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외국과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상호인정이나 국제적인 유통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상충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작업반의 논의 동향 및 최근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어음법 상의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규정안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규정안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를 (a) 그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 그가 만든 지침에 따를 것, (b) 그가 만든 모든 지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 (c) 신뢰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 (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i) [[발행자/채무자] 및 지배하는 자] [관련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 (ii)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완결성을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았을 것, (ii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명기된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 (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이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⁷⁶⁾을 규정하고 있고, 물적 요건으로서 (a)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b) 전자어음의 상환청

7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c)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d)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e)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⁷⁷⁾ 양자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규정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것인가와 그러한 수준을 전자어음법과 실무에서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정성적 평가인데, 규정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정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전자어음법은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지정절차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규정안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제4초안 제32조에 따르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 (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 (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 (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 (e) 독립 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 (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구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공표의 존재, (g) 기타 관련 요소를 신뢰성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⁷⁸⁾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

7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7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면서, (a) 관리기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b)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c)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d)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e)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f)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g)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및 검사로부터 규정안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신뢰성 기준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정안에서 요구하는 독립 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에 관한 사항⁷⁹⁾과 국가, 인정 기구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공표에 관한 사항은 전자어음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전자어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전자어음법 혹은 하위법령을 개선할 때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V.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다양한 전자금융거래수단을 규율하면서, 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자양도성기록이며, 투자 증서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전자양도성기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와 관련성을 가지는 전자금융거래수단의 범위도 달라진다. 규정

79) 전자어음법 제20조에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안 상의 ‘독립기구’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전자어음법 제20조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후의 논의 전개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

안 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개념 짓는 핵심요소를 ‘양도성’, ‘권리화체성’, ‘전자기록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각종 전자금융거래수단도 규정안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자채권의 경우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됨으로써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채권등록은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⁸⁰⁾ ‘권리화체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안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⁸¹⁾ 이는 ‘양도성’, ‘권리화체성’, ‘전자기록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규정안 상의 전자양도성기록에 해당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이용자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규정안 제2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V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함)에 의한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은 등기의 방법으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등록의 방법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규정

80)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전자채권의 등록은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며, 그 전자등록 정보에 권리가 화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1) 전자화폐는 제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안은 그 규율대상을 기본적으로 증서에 기반한 권리의 이전을 중심으로 다루는 반면, 동산채권담보법이 규정하는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13조), 채권담보권이나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도 제13조가 준용되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동산채권담보법 상의 등기나 등록은 “양도”가 아닌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안 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의 핵심 요소인 “권리화체성”이나 증권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권담보권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담보등기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과는 구별된다.⁸²⁾ 결과적으로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안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82)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에 따르면,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관한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국내 주요 관련 법률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무작업반의 논의는 최근의 제48차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3초안과 제49차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4초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전자양도성기록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규정안의 적용범위, 특히 종래 규범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와 그 기능적 등가물로서의 ‘지배(control)’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규정안으로 인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서명법」, 증권적 채권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전자약속어음에 관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채권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기·등록을 이용하여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정안은 국내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실무작업반의 논의 경과에 따라 비교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국내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규정안이 우리 국내법과 조화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교법적 검토와 국내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실무작업반 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관련법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상룡, 민법총칙, 전정판, 법문사,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 김상용, 민법총칙, 신정판 증보, 법문사, 2003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총칙
편, 물권편, 채권편), 1957
-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제3판, 2004
- 이준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현안분석 2013-07),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정경영,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의 ‘증
권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최근 UNCITRAL Working Group
IV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4
- 최경진, “물건요건론 소고”,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04.6
- 최경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 -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
22집제1호, 2013
- 최경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제1호, 2010

참 고 문 헌

최경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정보법학』, 제15권제1호,
2011

황적인 집필대표, 주석민법 Ⅱ(물권법, §§185-372), 1992

부 록 1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3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

원 문	번역문
<p>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orty-ninth session New York 28 April-2 May 2014</p> <p>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General (Articles 1-6) 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s 7-12) 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s 13-30) 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Articles 31-32) 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 33)</p>	<p>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p> <p>실무작업반 IV(전자상거래 분과) 제49차 회기 뉴욕, 2014년 4월 28일~ 5월 2일</p> <p>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p> <p>A. 일반 (제1조~제6조) B. 전자거래 규정 (제7조~제12조) C.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제13조~제30조) D.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제31조 ~ 제32조) E.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 (제33조)</p>
<p>A. General</p> <p>“Draft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this Law.</p>	<p>A. 일반</p> <p>제 1 조 적용범위</p> <p>1. 이 법은 모든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 2. 이 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원 문	번역문
<p>“[3.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other than as provided by [law governing a certain typ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p>	<p>[3. 이 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일정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p>
<p>“Draft article 2. Exclusion “1.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applicable to consumer protection. “2. This Law does not apply to securities, such as shares and bonds, and other investment instruments. “3 [This Law does not apply to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cheques.]”</p>	<p>제 2 조 적용제외 1. 이 법은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에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및 기타 투자 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entitles the holder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record.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eans a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issued on</p>	<p>제 3 조 정의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이란 그 소지자에게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란 소지인이 문서 또는 증서에서 [지시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p>

원 문	번역문
<p>paper that entitles the holder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document or instrument.]</p> <p>[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s or instruments include bills of exchange, cheques, promissory notes, [consignment notes,] bills of lading and warehouse receipts.]</p> <p>“electronic record” means information generated,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all information logically associated or otherwise linked [together] [thereto] [so as to become part of the record], whether generated contemporaneously or [not] [subsequently].</p> <p>“issuer” means a person that issues [directly, or with the assistance of a third party,]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n its own behalf].</p> <p>“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de facto power to deal with or dispose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power to factually deal with or dispose of</p>	<p>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문서나 증서의 이전을 통하여 그 문서나 증서에서 [지시한]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종이로 발행된 문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p> <p>[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송장,] 선하증권 및 창고증권을 포함한다.]</p> <p>“전자기록”이란 적절한 경우에 동시 또는 [그렇지 않든][차후에든], [함께][그것에][그 기록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p> <p>“발행자”란 [그 자신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직접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사실상 처리하거나 처분할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사</p>

원 문	번역문
<p>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rol in fact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hold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 person 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p> <p>“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transfer of control ov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mendment” means the modif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24.</p> <p>“performance of obligation” means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as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obligor” means the person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o has the obligation to perform.</p> <p>“replacement” means substitu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with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vice versa]</p>	<p>실상 지배]를 의미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란 [제18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이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정정”이란 초안 제2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의미한다.</p> <p>“의무의 이행”이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대로 물품의 인도 또는 일정 금액의 지불을 의미한다.</p> <p>“채무자”란 이행할 채무를 가진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자를 의미한다.</p> <p>“교체”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또는 [역으로][반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p>

원 문	번역문
<p>[conversely].</p> <p>“third-party service provider” means a third party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1 and 32.”</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 [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p>
<p>“Draft article 4. Interpretation</p> <p>“1. This Law is derived from [...] of international origin.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the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p> <p>“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p>	<p>제 4 조 해석</p> <p>1. 이 법은 국제적인 근원의 [...]로부터 유래한다.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근원, 그 적용 상의 통일성의 증진에 대한 필요 [및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p> <p>2.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준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5. Party autonomy [and privity of contract]</p> <p>“1. The parties may derogate from or vary by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Law [except articles 6, 7 and ...]</p> <p>“2. Such an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rights of any person that is not a party to that agreement.”</p>	<p>제 5 조 당사자 자치 [및 계약관계]</p> <p>1. 당사자는 [제6조, 제7조 및 ...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들을 약정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달리할 수 있다.</p> <p>2. 그러한 약정은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6. Information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erson to disclose its identity, place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erson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p>	<p>제 6 조 정보 요건</p> <p>이 법의 어떤 규정도 자연인이 그들의 신원, 영업 소재지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연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 불완전 또는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는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Draft article 7. Legal recogni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p>	<p>B. 전자거래 규정</p> <p>제 7 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8. Writing “Where the law requires that information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제 8 조 서 면</p> <p>법이 정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9. Signature</p> <p>“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method used is either:</p> <p>(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record was gener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p> <p>(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p>	<p>제 9 조 서 명</p> <p>법이 자연인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p> <p>(b)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p> <p>(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p> <p>(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p>
<p>Option A</p> <p>“Draft article 10. Original</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the original] [its absenc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p>	<p>[A안]</p> <p>제10조 원 본</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부재] [그 원본의 부재]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신뢰할 만한 방법이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다:</p>

원 문	번역문
<p>record if a reliable method is employed:</p> <p>(a)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 or to identify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s containing the authoritativ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able as such and to prevent its unauthorized replication]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1]; and</p> <p>(b) to retain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rom the time of its issuance, apart from the additions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2].”</p> <p>“Draft article 11. Uniqueness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 or to identify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s containing the authoritativ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p>	<p>(a) [초안 제11조에 따라]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여겨지게 하는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하기 위하여][그 전자양도성기록을 그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p> <p>(b) [초안 제12조에 따라][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야기되는 추가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 발행시로부터]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p> <p>제1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p> <p>1. [전자양도성기록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여겨지게 하는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하기 위하여][그 전자양도성기록을 그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p>

원 문	번역문
<p>cord identifiable as such and to prevent its unauthorized replication].</p> <p>“2. A method satisfies paragraph 1, if it:</p> <p>(a) Designates an authoritative cop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ich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 and</p> <p>(b) Ensures that the authoritative cop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annot be reproduced.”</p> <p>“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Draft article 12. Integrit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retain the integrit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rom its issuance.</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p>	<p>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2. 다음과 같은 방법은 제1항을 충족한다:</p> <p>(a) 그렇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 사본을 할당하고;</p> <p>(b)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 사본이 재생산될 수 없도록 확보할 것</p> <p>3. 제1항을 위하여,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제12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p> <p>1. 발행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p> <p>2. 제1항을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p>

원 문	번역문
<p>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Option B</p> <p>“Draft article 10. Original</p> <p>“1. Where the law requires [th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the original] [its absenc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reliable method is employed:</p> <p>(a)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 or to identify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s containing the authoritativ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able as such and to prevent its</p>	<p>[B안]</p> <p>제10조 원 본</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부재] [그 원본의 부재]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신뢰할만한 방법이 사용된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여겨지게 하는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하기 위하여][그 전자양도성기록을 그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및</p>

원 문	번역문
<p>unauthorized replication]; and</p> <p>(b) to retain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a), the criteria for assessing uniqueness shall be:</p> <p>(a) wheth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dentified as containing the authoritativ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whether its unauthorized replication is prevented.</p> <p>“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b):</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for integrity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b)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p> <p>2. 제1항 (a)를 위하여, 유일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여겨지게 하는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하는지의 여부</p> <p>(b) 그 무권한 복제가 방지되는지의 여부.</p> <p>3. 제1항(b)를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완결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Option C</p> <p>“Draft article 10. Original</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the original] [its absenc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reliable method is employed:</p> <p>(a)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 or to identify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s containing the authoritativ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rend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able as such and to prevent its unauthorized replication]; and</p> <p>(b) to retain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rom the time of its issuance, apart from the additions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Draft article 11. General reliability standard</p> <p>“1. In determining re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0, 18, 24, 27,</p>	<p>[C안]</p> <p>제10조 원 본</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부재] [그 원본의 부재]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신뢰할만한 방법이 사용된다면 전자양도성 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여겨지게 하는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하기 위하여][그 전자양도성기록을 그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권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및</p> <p>(b)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야기되는 추가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 발행시로부터]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p> <p>제11조 일반 신뢰성 기준</p> <p>1. [제10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및 …]를 위한</p>

원 문	번역문
<p>28 and 29 and …] regard shall be had to the extent to which the method employed is able to ensure data integrity and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and use of the [system] [method].</p> <p>“2.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 method is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0, 18, 24, 27, 28 and 29 and …],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a) Level of assurance of data integrity;</p> <p>(b) Ability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and use of the system;</p> <p>(c)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d)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e)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a supervisory body, an accreditation body or a voluntary scheme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or</p> <p>(f) Any other relevant factor.”</p>	<p>신뢰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시스템][방법]에의 무권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p> <p>2. [제10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및 …]를 위하여 방법이 신뢰할만한가 또는 신뢰할만한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p> <p>(a) 데이터 완결성의 확보 정도;</p> <p>(b) 시스템에의 무권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할 능력;</p>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d) 독립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정도;</p> <p>(e) 그 방법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독 기구, 인정 기구 또는 자발적 체제에 의한 공표의 존재; 또는</p> <p>(f) 기타 관련 사항.</p>
<p>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13.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p> <p>제1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p>

원 문	번역문
<p>transferable records</p> <p>“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received.</p> <p>“2.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t another electronic address of the addressee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신 시기는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만일 전자양도성기록이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양도성기록이 수신된 때가 송신시기이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주소로부터 수신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수신시기는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주소에 송신된 것을 수신자가 인식하고 그 주소에서 수신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p>

원 문	번역문
<p>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p> <p>“3.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p> <p>“4.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an electronic address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 place wher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p>	<p>3. 전자양도성기록은 송신자의 영업소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자의 영업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p> <p>4. 전자주소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소재지가 전자양도성기록이 제3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된다.</p>
<p>“Draft article 14. Consent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out its consent.</p> <p>“2. The consent of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nferred from the person's conduct.”</p>	<p>제1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p> <p>1.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그 동의 없이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자연인의 동의는 자연인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15. Issuance of multiple originals</p> <p>“Where the law permits the issuance of more than one original of</p>	<p>제15조 복수 원본의 발행</p> <p>법이 2 이상의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허용하</p>

원 문	번역문
<p>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is may be achieved with respect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y …”]</p>	<p>는 경우에, 이는 …에 의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성취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16. Substantiv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eyond that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제16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실체적 정보 요건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초과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p>
<p>“Draft article 17. Additi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Nothing in this Law precludes the inclusion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ddition to that contain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제1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 정보에 더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p>
<p>“Draft article 18. Possession “1. Where the law requires the possess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ossession, that requirement is met through the [de facto]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a reliable</p>	<p>제18조 점유 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신뢰할만한 방법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p>

원 문	번역문
<p>method.</p> <p>“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subject to control from the time of its issuance until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전자양도성기록은 발행시부터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p>
<p>Draft article 19. Reliability of method for establishing control</p> <p>“Option X</p> <p>“A method satisfies draft article 18, and a person is deemed to hav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ssued and transferred in such a manner that:</p> <p>(a) The uniqueness and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r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11 and 12 of Option A];</p> <p>(b)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es the person [asserting control] [who, directly or indirectly,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record]; and</p> <p>(c)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maintained by the person asserting control.”</p> <p>“Option Y</p> <p>“For the purposes of draft articles [11 and 12 of Option A and 18], a</p>	<p>제19조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의 신뢰성</p> <p>[X안]</p> <p>전자양도성기록이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이전되는 경우에 방법은 제18조를 충족하고,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p> <p>[(a)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 및 완결성이 [A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유지되는 경우;</p> <p>(b) 전자양도성기록이 [지배를 주장하는][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기록 상 [사실상] 지배를 가지는]자를 식별하고: 그리고</p> <p>(c) 전자양도성기록이 지배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p> <p>[Y안]</p> <p>[A안 제11조 및 제12조 그리고 제18조]를 위하여, 방법은 무권한 접</p>

원 문	번역문
<p>method is reliable when it prevents unauthorized access and use and ensures [data]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근 및 이용을 방지하고 [전자양도성기록의] [데이터] 완결성을 확보하는 때에 신뢰할만하다.</p>
<p>“Draft article 20. Delivery “Where the law requires the delivery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delivery,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0조 교부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교부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1. Presentation “Where the law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resent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y demonstrating that the person has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1조 제시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제시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2. Endorsement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endorsem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p>	<p>제22조 배서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배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배서][배서</p>

원 문	번역문
<p>for the absence of endorsement,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e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dorsement] [the intention to endorse] is [logically associated or otherwise linked to] [included in]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at information is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articles 8 and 9.”</p>	<p>할 의사]와 관련된 정보가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되고][포함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제8조 및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3. 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1. [To transf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holder shall transfer the control of the record to the transfere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transferred with the transfer of control from the holder to the transferee.] “2.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the transfer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When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law], the holder may: (a) Transfer to a named perso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or transferred to bearer; or (b) Transfer to bear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or transferred to a named person.]”</p>	<p>제2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p> <p>1.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소지자는 양수인에게 그 기록의 지배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지배의 이전으로 소지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p> <p>2.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 하는 법에 따라][현행법 하에서 허용되는 때에] 그 소지인은: (a) 소지인에게 발행되거나 이전된 전자양도성기록을 명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는 (b) 명의인에게 발행되거나 이전된 전자양도성기록을 소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24.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amendm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amendment],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for amendment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ereby [all] the amended information is [accurately] reflect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p> <p>“2. Upon amendment,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n amendment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정정을 요구하는 [또는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정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 [모든] 정정된 정보가 [정확하게] 전자양도성기록에 반영되고 그것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전자양도성기록의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p>2. 정정시에 정정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5. Reissuance</p> <p>“1. When the law permits the re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reissued.</p> <p>“2. Upon re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 reissuance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5조 재발행</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재발행을 허용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은 재발행될 수 있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재발행 시에, 재발행이 이루어진 효과에 관한 진술이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26. Replacement</p> <p>“1. I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document or instrument with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surrender] [for replacement]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p> <p>(c) [After] [Upon] issuan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 a paper-based document</p>	<p>제26조 교체</p> <p>1.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발행되고 그 소지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그 문서나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자는 그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발행자/채무자]에게 [교체를 위하여] [제시] [교부]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대신에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을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후] [시], 그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그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로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원 문	번역문
<p>or instrument:</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surrender] [for replacement] [transfer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c) [After] [Upon] issuance of the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3. Parties may consent to replacement at any time prior [or simultaneously] to the replacement.</p> <p>“4. Replacement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p> <p>“5.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 1,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terminated] [invalidated], but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not been perfected for technical rea-</p>	<p>(a) 그 소지인은 [발행자/채무자]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를 위하여] [제시][의 지배를 이전] 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전자양도성기록 대신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종이 기반의 문서 또는 증서를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 [후][시],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3. 당사자는 교체 전 [또는 동시에] 어느 때나 교체에 동의할 수 있다.</p> <p>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5.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폐지][무효화]되었지만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이 기술적인 이유로 완전하지 않다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그 원래 형태로 재발행될 수 있다 [또는 교체하는</p>

원 문	번역문
<p>sons,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ay be re-issued in its original medium [or the replac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ssued].</p> <p>“6.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 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terminated] [invalidated], but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not been perfected for technical reasons,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reissued in its original medium [or the replac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ay be issued].”</p>	<p>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될 수 있다].</p> <p>6.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이 [폐지][무효화]되었지만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이 기술적인 이유로 완전하지 않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원래 형태로 재발행될 수 있다 [또는 교체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27.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permits the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method for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provided.</p> <p>“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divid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p>	<p>제2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및 통합</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분할 또는 통합을 허용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또는 통합을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2 또는 그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분할하는 것에</p>

원 문	번역문
<p>cord into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The holder shall [transfer] [present for divis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wo or mor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hall be issued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p> <p>(c) Upon divis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resulting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3. If the holder of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issuer/obligor] of which is the same, agrees with the [issuer/obligor] to consolidat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to a singl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holder shall [transfer] [present</p>	<p>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분할을 위하여 제시][이전] 하여야 한다;</p> <p>(b) 2 이상의 신규 전자양도성기록은 발행되어야 하며,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과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분할시,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생성된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3.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가 그 [발행자/채무자]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단일한 전자양도성기록으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자는 그 전자양도성기</p>

원 문	번역문
<p>for consolid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issued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c) Upon consolidat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ease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통합을 위하여 제시][이전] 하여야 한다;</p> <p>(b)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은 발행되어야 하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c) 통합시,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들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Draft article 28. Termin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termin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method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further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statement to indicate the termin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p>	<p>제28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전자양도성 기록의 향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지시하는 진술을 그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하</p>

원 문	번역문
<p>ment or instrument be includ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by including a statement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terminated.”</p>	<p>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폐지된 효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됨으로써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9.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or security right purposes “Where the law permits the us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for security right purposes, a reliable method to allow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for security right purposes shall be provided.”</p>	<p>제29조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법이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허용하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30. Retention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information therein] be retained, that requirement is met by retaining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information therein]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a)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 1.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그 안의 정보]가 보관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충족된다: (a)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할 것;</p>

원 문	번역문
<p>(b)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2 of Option A [, apart from any change that arises fro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record may not further circulate];</p> <p>[(c) Information [, if any,]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issuer and holder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date and time when it was issued and transferred as well as when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it is terminated] is made available;]</p> <p>(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retained in the format in which it was generated, transferred and presented for performance, or in a format which can be demonstrated to represent accurately the information generated, sent or received; and</p> <p>[(e)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date and time of their involvement is made available.]</p> <p>“2. A person may satisfy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p>	<p>(b) [그 기록이 향후 유통되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로부터 야기되는 변경을 제외하고,]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이 A안 제12조에 따라 확보될 것;</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자와 소지인 및 발행되고 이전되는 일시와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는][폐지되는] 일시를 식별하게 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가 이용 가능할 것;]</p> <p>(d)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 이전 및 이행을 위한 제시된 형태, 또는 생성, 송신 또는 수신된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형태로 유지될 것; 그리고</p> <p>[(e)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의 관련 당사자 및 그 관련 일시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이용가능할 것.]</p> <p>2. 제1항의 (a)-(e)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인은 제3자의</p>

원 문	번역문
<p>(1) by using the services of a third party,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e) of paragraph 1 are met.”</p>	<p>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항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p>
<p>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p> <p>“Draft article 31. Conduct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Where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upports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p> <p>(a) Act in accordance with statements made by it with respect to its policies and practices;</p> <p>(b)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of all statements made by it;</p> <p>(c)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formation about it;</p> <p>(d)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 The method used to identify the [issuer/obligor] and the holder;</p> <p>(ii) Tha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tained its integrity and has</p>	<p>D. 제3자 서비스 제공자</p> <p>제31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p> <p>(a) 그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술에 따라 행할 것</p> <p>(b)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p> <p>(c) 신뢰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p> <p>(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p> <p>(i) [발행자/채무자] 및 소지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p> <p>(ii)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완결성을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았을 것;</p>

원 문	번역문
<p>not been compromised;</p> <p>(iii)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e) Use trustworth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in performing its services.”</p>	<p>(ii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명기된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p> <p>(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이용할 것.</p>
<p>“Draft article 32. Trustworthiness</p> <p>“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 subparagraph (e)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utiliz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are trustworthy,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a)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existence of assets;</p> <p>(b)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c)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related parties;</p> <p>(e)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f)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the State, an accreditation body or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regarding compliance with or existence of the foregoing; and</p>	<p>제32조 신뢰성</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31조 (e)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p> <p>(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p> <p>(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p> <p>(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p> <p>(e) 독립 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p> <p>(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구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공표의 존재; 그리고</p>

원 문	번역문
(g) Any other relevant factor.”	(g) 기타 관련 요소.
<p>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33. Non-discrimination of foreig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1.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was issued or used in a foreign State [, or that its issuance or use involved the services of a third party based, in part or wholly, in a foreign States] [,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p> <p>“2.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E.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p> <p>제33조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무차별</p> <p>1. 전자양도성기록은 [만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 수준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외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이용되었다는 [또는 그 발행이나 이용이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외국에 근거를 둔 제3자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성이 부인되지 말아야 한다.</p> <p>2.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부 록 2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4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

원 문	번역문
<p>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iftieth session Vienna 10-14 November 2014</p> <p>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General (Articles 1-6) 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s 7-9) 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s 10-30) 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Articles 31-32) 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 33)</p>	<p>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p> <p>실무작업반 IV(전자상거래 분과) 제50차 회기 비엔나, 2014년 11월 10일 - 14일</p> <p>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p> <p>A. 일반 (제1조~제6조) B. 전자거래 규정 (제7조~제9조) C.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제10조~제30조) D.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제31조 ~ 제32조) E.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 (제33조)</p>
<p>A. General</p> <p>“Draft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this law,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f any rule of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A. 일반</p> <p>제 1 조 적용범위</p> <p>1. 이 법은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 2.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원 문	번역문
<p>“[3.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other than as provided by [law governing a certain typ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p>	<p>[3. 이 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일정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p>
<p>“Draft article 2. Exclusions “1.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applicable to consumer protection. “2. This Law does not apply to securities, such as shares and bonds, and other investment instruments. “3 [This Law does not apply to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cheques.]”</p>	<p>제 2 조 적용제외 1. 이 법은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에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및 기타 투자 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entitles the person in control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record.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eans a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issued on</p>	<p>제 3 조 정의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이란 그 지배하는 자에게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서 [지시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란 그 지배하는 자가 문서 또는 증서에서 [지시한] 채무의 이</p>

원 문	번역문
<p>paper that entitles the person in control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document or instrument.</p> <p>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s or instruments include bills of exchange, cheques, promissory notes, [consignment notes,] bills of lading and warehouse receipts.</p> <p>“electronic record” means information generated,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all information logically associated or otherwise linked [together] [thereto] [so as to become part of the record], whether generated contemporaneously or [not] [subsequently]].</p> <p>“issuer” means a person that issues, directly or with the assistance of a third party,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de facto power to deal with or dispose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문서나 증서의 이전을 통하여 그 문서나 증서에서 [지시한]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종이로 발행된 문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p> <p>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송장,] 선하증권 및 창고증권을 포함한다.</p> <p>“전자기록”이란 적절한 경우에 동시 또는 [그렇지 않든][차후에든], [함께][그것에][그 기록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서 의하여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p> <p>“발행자”란 전자양도성기록을 직접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사실상의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사실상 처리하거나 처분</p>

원 문	번역문
<p>[power to factually deal with or dispos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rol in fact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transfer of control ov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mendment” means the modif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24.</p> <p>“performance of obligation” means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as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obligor” means the person [indicat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s having the obligation to perform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at document, instrument or record].</p> <p>“replacement” means substitu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with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vice versa] [conversely].</p>	<p>할 권한][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이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정정”이란 초안 제2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의미한다.</p> <p>“의무의 이행”이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대로 물품의 인도 또는 일정 금액의 지불을 의미한다.</p> <p>“채무자”란 [그 문서, 증서 또는 기록 상에 포함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짐에 따라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나 전자양도성기록 상에 [지시된] 자를 의미한다.</p> <p>“교체”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또는 [역으로][반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p>

원 문	번역문
<p>“third-party service provider” means a third party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1 and 32].”</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p>
<p>“Draft article 4. Interpretation “1. This Law is derived from [...] of international origin.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the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p>	<p>제 4 조 해석 1. 이 법은 국제적인 근원의 [...]로부터 유래한다.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근원, 그 적용 상의 통일성의 증진에 대한 필요 [및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준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5. Party autonomy [and privity of contract] “1. The parties may derogate from or vary by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law [except articles 1, 2, 4, 5 paragraph 2, 6, 7, [...], 31 and 32]. “2. Such an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rights of any person that is not a party to that agreement.”</p>	<p>제 5 조 당사자 자치 [및 계약관계] 1. 당사자는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 제31조 및 제32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들을 약정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달리할 수 있다. 2. 그러한 약정은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6. Information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erson to disclose its identity, place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erson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p>	<p>제 6 조 정보 요건</p> <p>이 법의 어떤 규정도 자연인이 그들의 신원, 영업 소재지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연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 불완전 또는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는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Draft article 7. Legal recogni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p>	<p>B. 전자거래 규정</p> <p>제 7 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p> <p>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8. Writing “Where the law requires that information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제 8 조 서면</p> <p>법이 정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9. Signature</p> <p>“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record; and</p> <p>(b) The method used is either:</p> <p>(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record was gener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p> <p>(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p>	<p>제 9 조 서명</p> <p>법이 자연인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p> <p>(a) 그 전자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p> <p>(b)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p> <p>(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p> <p>(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p>
<p>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10.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perative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the use</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p> <p>“제10조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유효한 전자기록] [전자양도성기록]</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p>

원 문	번역문
<p>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its absence, that requirement is met by the use of [an] [one or more than one] electronic record if a reliable method is employed:</p> <p>(a) To identify that electronic record as the [operative] electronic record to be used a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o prevent the unauthorized replication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b) To render that electronic record capable of being subject to control during its life cycle; and</p> <p>(c) To retain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A method satisfies subparagraph 1(a),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draft articles 12, 18 and 19]; subparagraph 1(b),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draft articles 12, 18 and 19]; subparagraph 1(c),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draft articles 11 and 30].”]</p>	<p>또는 증서의 이용을 요구하거나 그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이용된다면, 그 요건은 [하나 이상의] 전자기록의 이용에 의하여 충족된다:</p> <p>(a) 그 전자기록을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이용되는 [유효한] 전자기록으로서 확인하기 위하여;</p> <p>(b) 그 전자기록이 그 생애주기 동안 지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p> <p>(c)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p> <p>[“2.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a)를 충족한다; 만일 [초안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b)를 충족한다; 만일 [제11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항 (c)를 충족한다.”]</p>
<p>“Draft article 11. Integrit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retain the integrity of an</p>	<p>“제1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p> <p>1. 발행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p>

원 문	번역문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rom its issuance.</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draft article 10[1](c)] :</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cluding any [legally relevant] [authorized]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any change which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an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30];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p> <p>2. [제1항][초안 제10조 [1](c)]의 목적을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통신, 저장 및 표시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제외하고][초안 제30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생겨나는 [법적으로 관련된][권한을 부여 받은] 변경을 포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12. General reliability standard</p> <p>“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 method is reliable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0, 11, 18 and …],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제12조 일반 신뢰성 기준</p> <p>[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를 위하여 방법이 신뢰할만한가 또는 신뢰할만한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p>

원 문	번역문
<p>(a) Level of assurance of data integrity;</p> <p>(b) Ability to prevent unauthorised access to and use of the system;</p> <p>(c)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d)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e)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a supervisory body, an accreditation body or a voluntary scheme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or</p> <p>(f) [Any agreement among the parties;] and</p> <p>(g) Any other relevant factor.</p>	<p>(a) 데이터 완결성의 확보 정도;</p> <p>(b) 시스템에의 무권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할 능력;</p>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d) 독립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정도;</p> <p>(e) 그 방법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독 기구, 인정 기구 또는 자발적 체제에 의한 공표의 존재; 또는</p> <p>(f)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p> <p>(g) 기타 관련 사항.</p>
<p>“Draft article 13.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p>	<p>제1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송신 시기는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만일 전자양도성기록이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양도성기록이 수신된 때가 송신시기이다.</p>

원 문	번역문
<p>cord is received.</p> <p>“2.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t another electronic address of the addressee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p> <p>“3.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p> <p>“4.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an electronic address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주소로부터 수신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수신시기는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주소에 송신된 것을 수신자가 인식하고 그 주소에서 수신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p> <p>3. 전자양도성기록은 송신자의 영업소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자의 영업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p> <p>4. 전자주소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소재지가 전자양도성기록이 제3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된다.]</p>

원 문	번역문
<p>place wher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p> <p>[“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indication of a time or a place with respect to the us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indicate that time or place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기 또는 장소의 지시를 요구하는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 기록의 이용과 관련한 시기 또는 장소를 지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14. Consent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out his or her consent.</p> <p>“2. The consent of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nferred from the person’s conduct.”</p>	<p>제1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p> <p>1.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그 동의 없이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자연인의 동의는 자연인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15. [Issuance of] multiple originals</p> <p>“1. Where the law permits the issuance of more than on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is may be achieved with respect to the use of electronic</p>	<p>[제15조 복수 원본[의 발행]</p> <p>1. 법이 2 이상의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이는 [복수의 [유효한] 전자기록의 발행]으로써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성취</p>

원 문	번역문
<p>transferable records by [issuance of multiple [operative] electronic records].</p> <p>[“2. The total number of multiple [operative] electronic records issued shall be indicated in those multiple records.]</p> <p>[“3. Where multiple [operative] electronic records have been issued, any requirement for presentation of more than on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is met by the presentation of one [operative] electronic record[,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p>	<p>될 수 있다.</p> <p>[2. 발행된 복수의 [유효한] 전자 기록의 총수는 해당 복수 기록에 지시되어야 한다.]</p> <p>[3. 복수의 [유효한] 전자기록이 발행된 경우에 2 이상의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의 원본의 제시를 위한 요건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은 한] 하나의 [유효한] 전자기록의 제시로써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16. Substantiv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eyond that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제16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실체적 정보 요건</p> <p>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초과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p>
<p>“Draft article 17. Additi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Nothing in this law precludes the inclusion of information in an elec-</p>	<p>제1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p> <p>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p>

원 문	번역문
<p>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ddition to that contain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정보에 더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p>
<p>“Draft article 18. Possession “1. Where the law requires the possess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ossess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A method is used to establish control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o identify the person in control]; and (b) The method used is either: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created] [gener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capable of [control] [being subject to control] by [a single] [one or more] person during</p>	<p>제18조 점유 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 (a) 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기 위한 [그리고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b) 그 이용된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다: (i) 관련 약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의 측면에서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만들어진][생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할만하다; 또는 (ii) 그 자체 또는 추가 증거와 함께 위 (a)에서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사실상 증명된다. 2.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생애주기 동안 [단일한] [1 또는 2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지배될][지배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its life cycle.]”	
<p>Draft article 19. [Presumption of person in control]</p> <p>“A person is deemed to hav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es that person as the person [in control] [asserting control] [who, directly or indirectly, has control over the electronic record]; and</p> <p>(b)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maintained] by that person.”</p>	<p>제19조 [지배를 가진 자의 간주]</p> <p>“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a)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그를 [지배하는][지배를 주장하는][직간접적으로 그 전자기록 상의 지배를 가지는] 자로서 확인한 경우; 그리고</p> <p>(b)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그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p>
<p>“Draft article 20. Delivery</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delivery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delivery,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0조 교부</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교부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1. Presentation</p> <p>[“Where the law requires a person to presen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non-presentation],</p>	<p>제21조 제시</p> <p>[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제시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자가 전자양도성기</p>

원 문	번역문
<p>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at person demonstrates that it has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ndicates the intention to pres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록의 지배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한다는 의사를 지시함으로써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2. Endorsement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endorsement in any form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endorsement,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dorsement is [logically associated or otherwise linked to] [included in]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at information is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articles 8 and 9.”</p>	<p>제22조 배서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형식에서 배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거나]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배서와 관련된 정보가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되고][포함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제8조 및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3. 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the transfer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When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law], the person in control may:</p>	<p>제2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 하는 법에 따라][현행법 하에서 허용되는 때에] 지배하는 자는:</p>

원 문	번역문
<p>(a) transfer to a named perso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or transferred to bearer; or (b) transfer to bear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or transferred to a named person.]”</p>	<p>(a) 소지인에게 발행되거나 이전된 전자양도성기록을 명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는 (b) 명의인에게 발행되거나 이전된 전자양도성기록을 소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p>
<p>“Draft article 24.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1.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mits] the amendm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amendment],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for amendment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ereby [all] the amended information is [accurately] reflect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 “2. Upon amendment,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n amendment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정정을 요구하는 [또는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정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 [모든] 정정된 정보가 [정확하게] 전자양도성기록에 반영되고 그것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전자양도성기록의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p>2. 정정시에 정정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5. Reissuance “1. When the law permits the re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p>	<p>제25조 재발행</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재발행을 허용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은 재발행될 수 있다.</p>

원 문	번역문
<p>reissued.</p> <p>“2. Upon re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 reissuance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재발행 시에, 재발행이 이루어진 효과에 관한 진술이 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6. Replacement</p> <p>“1. I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issued and the person in control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document or instrument with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person in control shall [present] [surrender] [for replacement]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person in control, in place of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p> <p>(c) [After] [Upon] issuance of the</p>	<p>제26조 교체</p> <p>1.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발행되고 그 지배하는 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그 문서나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지배하는 자는 그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발행자/채무자]에게 [교체를 위하여] [제시][교부]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대신에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후]</p>

원 문	번역문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person in control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p> <p>(a) The person in control shall [present] [surrender] [for replacement] [transfer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person in control, in pla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c) [After] [Upon] issuance of the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3. Parties may consent to replacement at any time prior [or simultaneously] to the replacement.</p>	<p>[시], 그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그 지배하는 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로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지배하는 자는 [발행자/채무자]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를 위하여] [제시][의 지배를 이전]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전자양도성기록 대신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종이 기반의 문서 또는 증서를 지배하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 [후][시],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3. 당사자는 교체 전 [또는 동시에] 어느 때나 교체에 동의할 수 있다.</p>

원 문	번역문
<p>“4. Replacement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p> <p>“5.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 1,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terminated] [invalidated], bu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not been issued for technical reasons,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ay be reissued [or the replac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ssued].</p> <p>“6.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paragraph 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terminated] [invalidated], but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not been issued for technical reasons,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reissued [or the replac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ay be issued].”</p>	<p>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5.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폐지][무효화]되었지만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기술적인 이유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그 원래 형태로 재발행될 수 있다 [또는 교체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될 수 있다].</p> <p>6.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이 [폐지][무효화]되었지만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이 기술적인 이유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재발행될 수 있다 [또는 교체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27.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permits the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p>	<p>제2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및 통합</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분할 또는 통합을 허용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p>

원 문	번역문
<p>instrument, a reliable method for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provided.”</p> <p>“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person in control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divid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to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The person in control shall [transfer] [present for divis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wo or mor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hall be issued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p> <p>(c) Upon divis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resulting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분할 또는 통합을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지배하는 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2 또는 그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p>(a) 그 지배하는 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분할을 위하여 제시][이전] 하여야 한다;</p> <p>(b) 2 이상의 신규 전자양도성기록은 발행되어야 하며,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과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분할시,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생성된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3. If the person in control of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issuer/obligor] of which is the same, agrees with the [issuer/obligor] to consolidat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to a singl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person in control shall [transfer] [present for consolid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issued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c) Upon consolidat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ease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3.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가 그 [발행자/채무자]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단일한 전자양도성기록으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p>(a) 그 지배하는 자는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통합을 위하여 제시][이전] 하여야 한다;</p> <p>(b)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은 발행되어야 하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c) 통합시, 이전에 존재했던 전자양도성기록들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Draft article 28. Termin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or per-</p>	<p>제28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p>

원 문	번역문
<p>mits the termin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method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further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statement to indicate the termin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be includ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by including a statement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terminated.”</p>	<p>또는 증서의 폐지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전자양도성 기록의 향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지시하는 진술을 그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폐지된 효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됨으로써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9.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or security right purposes</p> <p>“Where the law permits the us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for security right purposes, a reliable method to allow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for security right purposes shall be provided.”</p>	<p>제29조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p> <p>법이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허용하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30. Retention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p>	<p>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p> <p>1.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보관될 것을 규정하는</p>

원 문	번역문
<p>or instrument be retained, that requirement is met by retaining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information therein]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p> <p>(a)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b)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1 [, apart from any change that arises fro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record may not further circulate];</p> <p>[(c)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issuer and person 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parties] and [indicating the date and time [when it was issued and transferred as well as when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it is terminated]]] [of legally relevant events] is made available;]</p> <p>(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retained in the format in which it was generated, transferred and presented, or in a format which can be demonstrated to represent accurately the information generated, sent or received; and</p> <p>[(e)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p>	<p>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 [또는 그 안의 정보]을 보관함으로써 충족된다:</p> <p>(a)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할 것;</p> <p>(b) [그 기록이 향후 유통되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로부터 야기되는 변경을 제외하고,] 초안 제11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이 확보될 것;</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자와 지배하는 자][당사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발행되고 이전되는 때]와 [법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는][폐지되는] 때의] 일시를 지시하는 정보]가 이용 가능할 것;]</p> <p>(d) 전자양도성기록이 생성, 이전 및 제시된 형태, 또는 생성, 송신 또는 수신된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형태로 유지될 것; 그리고</p> <p>[(e)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에</p>

원 문	번역문
<p>fic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ndicating the date and time of their involvement] is made available].</p> <p>“2. A person may satisfy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by using the services of a third party,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e) of paragraph 1 are met.”</p>	<p>서 관련 당사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그 관련 일시를 지시하는 정보]가 이용가능할 것.]</p> <p>2. 제1항의 (a)-(e)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인은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1항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p>
<p>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p> <p>“Draft article 31. Conduct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Where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upports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p> <p>(a) Act in accordance with statements made by it with respect to its policies and practices;</p> <p>(b)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of all statements made by it;</p> <p>(c)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formation about it;</p> <p>(d)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p>	<p>D. 제3자 서비스 제공자</p> <p>제31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p> <p>(a) 그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술에 따라 행할 것</p> <p>(b)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p> <p>(c) 신뢰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p> <p>(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p>

원 문	번역문
<p>to ascertain, where relevant,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 The method used to identify the [[issuer/obligor] and the person in control] [concerned parties];</p> <p>(ii) Tha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tained its integrity and has not been compromised;</p> <p>(iii)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e) Use trustworth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in performing its services.”</p>	<p>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p> <p>(i) [[발행자/채무자] 및 지배하는 자] [관련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p> <p>(ii)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완결성을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았을 것;</p> <p>(ii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명기된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p> <p>(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이용할 것.</p>
<p>“Draft article 32. Trustworthiness</p> <p>“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 subparagraph (e)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utiliz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are trustworthy,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a)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existence of assets;</p> <p>(b)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c)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related parties;</p>	<p>제32조 신뢰성</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31조 (e)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p> <p>(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p> <p>(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p> <p>(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p>

원 문	번역문
<p>(e)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f)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the State, an accreditation body or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regarding compliance with or existence of the foregoing; and</p> <p>(g) Any other relevant factor.”</p>	<p>(e) 독립 기구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p> <p>(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구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공표의 존재; 그리고</p> <p>(g) 기타 관련 요소.</p>
<p>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33. Non-discrimination of foreig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1.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was issued or used [in a foreign State][abroad][, or that its issuance or use involved the services of a third party based, in part or wholly, [in a foreign State][abroad]][,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p> <p>“2.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E.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p> <p>제33조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무차별</p> <p>1. 전자양도성기록은 [만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 수준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외국][해외]에서 발행되었거나 이용되었다는 [또는 그 발행이나 이용이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외국][해외]에 근거를 둔 제3자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성이 부인되지 말아야 한다.</p> <p>2.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